

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##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01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5.

발의자 : 한정애 · 김정호 · 윤미향

강훈식 · 송옥주 · 김민석

이학영 · 장철민 · 김영주

김영진 · 정성호 · 이원욱

윤후덕 · 강선우 · 윤준병

최혜영 · 조오섭 의원

(17인)

### 제안이유

현재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,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신분증명서를 발급·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).
- 나.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삭제).
- 다.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).
- 라.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- 마.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(안 제28조제1항).
- 바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에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,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).

#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·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 희망등록에 관한 안내
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

나. 「여권법」 제4조에 따른 여권

다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

라. 「선원법」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

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2호 및 제2항”을 “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1명이”를 “1명이나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(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다)이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신고사항과 뇌사추정상태를 설명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8조의 제목 중 “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”를 “제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식받은”을 “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,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”을 “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·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장제비·진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”을 “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·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”으로 한다.

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병가로 처리하고,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한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적용례)  
제12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·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</p> <p>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</p> <p>나. 「여권법」 제4조에 따른 여권</p> <p>다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</p> <p>라. 「선원법」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</p>
<p>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) ① (생 략)</p>	<p>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

<p>② ~ ⑥ (생 략) 제17조(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사판정의 신청) ①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 ③ <u>제2항</u>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 략) 제22조(장기등의 적출 요건) ① ·</p> <p>② (생 략) ③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.</p> <p>1.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. <u>다만, 그 가족 또는 유</u> <u>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</u> <u>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</u> <u>다.</u></p>	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7조(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사판정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②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</u> <u>기관의 장은 뇌사추정자의 가</u> <u>족에게 신고사항과 뇌사추정상</u> <u>태를 설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22조(장기등의 적출 요건) ① ·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
--	---

<p>2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28조(기록의 작성 및 <u>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</u> 등)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·이식 및 장기등을 <u>이식받은</u>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<u>보건복지부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,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<u>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</u>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기록의 작성 및 <u>제출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 받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장기등을</u> <u>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</u> <u>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</u> <u>하여 그 내용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 <u>&lt;삭 제&gt;</u></p>
--	---

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 
지방검찰지청의 장에게 서면으  
로 알려야 한다.

<신 설>
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·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
3.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사용자

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 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,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-----  
----- 장제비·진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1호-----  
-----  
-----

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 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병가로 처리하고,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③ · ④ (생 략)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9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생 략)</li><li>2. <u>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사실</u></li></ol>	<p><u>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유급 휴가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한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·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·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</u></p> <p><u>⑥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·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·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----- ----- -----.</u></p> <p>-----.</p> <p>제49조(별 칙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</ol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--	--

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 
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  
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

3. (생 략)

3. (현행과 같음)